

##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0년 10월 17일

○ 회부일자 : 2000년 10월 19일

3. 제안이유

○ 상위법인 도시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건축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○ 거실의 채광 및 환기 관련 근거규정 변경(제3조)

· 건축법시행령 → 건축물의피난·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

○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 신설(제9조)

·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은 60제곱미터로 함.

· 본조항 추가에 따른 조문변경 : 제10조→제11조, 제11조→제12조 등

○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개정(제11조)

· 건축법시행령 개정(2000. 6. 27)에 따른 조문내용 정리

○ 양여된 토지의 처분계약 규정 개정(제18조)

· 제17조(토지의 처분계약)를 제18조(토지의 매각규모 등)로 개정

· 양여된 토지의 매각 규모 신설

○ 조례 효력(부칙)

· 법에서 정한 시한까지를 →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.

## 5. 검토의견

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 이는 상위법인 건축법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현행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